

발행일 2020년 10월 21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오명호 국회입법조사처장 직무대리 www.nars.go.kr 제1767호

이슈와 논점

# 개인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 쟁점 및 향후과제

조영은\*ㆍ최정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세계 각 국은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신용정보법」에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향후 개선과제로 ① 개인정보자기관리체계 구축 및 구체적 동의권 보장, ② 이동 정보의 범위 명확화, ③ 점진적인 개인정보 이동권의 범위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 1

## 들어가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두고 여러 나라에서 법·제도를 정비하고 전 략을 추진 중에 있다. 유럽연합은 2016년 기존의 「EU 개인정보 보호지침(Directive(95/46/EC))」을 「일반 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2016; GDPR)으로 개정하면서 개인정보 이동권(Data portability)을 신설하였다.

개인정보이동권(이하 '이동권')은 정보주체가 본인 데이터에 대한 전송을 요청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한 데이터를 개인(요청자) 또는 개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하는 정보주체의 권리이다. 1) 최근 이와 같은 이동권을 근거로 정보주체가 데이터를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가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가능케 하는 정책과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1) 박훤일, 「정보이동권의 국내 도입 방안」, 『경희법학』, 52(3), 2017.

우리나라는 2020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이동권에 해당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과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의 근거인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관한규정을 신설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유통, 학술 등 8개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 마이데이터의 근거가 되는 정보이동권이 일 반적인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아닌 신용정보<sup>2)</sup>에만 적용되는 「신용정보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과 관련한 한계가 지적되고 있으며,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 시 개인정보자기결정 권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이동권 관련한 유럽 GDPR 및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신용정보법」에서의 개인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 관련 쟁점 사항 및 향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 「신용정보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열거된 정보를 뜻함.



<sup>\*</sup>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02-6788-4583, jye@assembly.go.kr

<sup>\*\*</sup>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02-6788-4565, jmchoi@assembly.go.kr

# 2

## 개인정보 이동권 관련 해외 사례

### 1)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데이터에 대한 독점을 완화하여 기업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인정보 이동권을 도입하였다.

GDPR 제20조 '정보 이동성에 대한 권리(Right to data portability)'는 정보주체가 컨트롤러<sup>3)</sup>에게 제공한 본인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정보주체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경우 개인정보가한 정보 관리자에게서 다른 정보 관리자에게로 직접 전송되도록 할 권리가 있다.

모든 정보가 개인정보 이동권의 대상은 아니며, ① 정보주체가 컨트롤러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로서 ② 처리가 정보주체의 동의에 근거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위한 것이며, ③ 처리가 자동화된 수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만 개인정보 이동권이 적용된다.<sup>4)</sup>

유럽의 GDPR은 개인정보 이동권을 통해 정보주체에게 본인 데이터를 다른 정보처리자에게 이전할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였다. 또한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과 같은 미국 IT 플랫폼 기업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정보처리자에게 소비자가 이전할수 있게 하여 앞서의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를 막고자 하였다. 5)

#### 2) 미국

미국은 유럽의 GDPR처럼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연방정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이 부재 하다. 미국은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민간의 데이터

3) 컨트롤러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수단을 단독 또는 제3자와 공동으로 결정하는 자연인, 법인, 공공 기관, 에이전시, 기타 단체를 의미함

유통 시장과는 별도로 정부 차원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일화으로 마이데이터 정책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2011년부터 연방정부 주도 하에 스마트 공개 정책(Smart Disclosure Policy)을 민관협력체계를 통해 시행하여 소비자의 개인정보 이동성을 구현하고 있다. 스마트 공개란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에 기반을 둔 구매결정(informed decision)을 할 수 있도록 소 비자의 소비와 관련한 정보와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포맷으로 맞추어 제공해준 것을 의미한다. 스마트 공개 정책의 시행에 따라, 의료분 야의 개인 건강데이터는 웹사이트에서 '블루 버튼'을 클릭하여 자신의 의료데이터의 전자사본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에너지 분야의 개인 에너지데이터는 '그런 버튼'을 통해 자신의 에너지 사용량과 요금 관련 데이 터를 확인할 수 있다.

연방수준은 아니지만 연방 및 주를 통틀어 최초로 2018년 6월에 「캘리포니아 주 소비자 프라이버시법」 (CCPA: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이 제정 되었다. CCPA는 합법적인 데이터 매매행위를 인정하고 규제하지 않는 반면, 불법적인 데이터 매매행위의 규제를 위한 명시적인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6)

#### 3) 일본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은 GDPR의 정보이동 권에 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일 본은 개인데이터 유통 체계인 '정보은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EU GDPR에서 표명한 데이터이동권을 참고하여 법제화를 검토 중이다.")

일본은 2018년 5월 12일 총무성과 경제산업성에서 '정보 신탁 기능의 인정에 관한 초안'을 발표하여 마이데이터 산업과 유사한 '정보은행' 산업을 장려하고 있다. <sup>8)</sup> 정보은행은 '정보이용신용은행제도'의 줄임

<sup>4)</sup> 한국인터넷진흥원, 「유럽의 개인정보 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 관련 동향」, 『해외 개인정보보호 동향 보고서』, 2018.

<sup>5)</sup> 송미정·김인석, 「유럽 PSD2 시행에 따른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정책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 연구」, 『정보보호학회지』, 29(5), 2019.

<sup>6)</sup> 최창수, 「미국 데이터 프라이버시법」,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제83호, 2019.

<sup>7)</sup> 조성은 외 4인, 「개인주도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9.

<sup>8)</sup> 법무법인 광장, 「MyData 서비스의 개인동의 방식 개선 연구」, 『한국데

말로, 개인 데이터 활용 계약 등에 따라 개인정보저 장소시스템을 활용하여 개인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 개인이 직접 자기정보결정권을 행사하기보다 신뢰 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대리 관리 모델이다. 즉, 개인이 정한 조건에 따라 대리인이 개인 대신 타 당성을 판단한 후 데이터를 제3자(사업자)에게 제공하 는 것을 결정하는 사업 모델이다. 9)

#### 4) 소결

3

유럽연합은 데이터 유통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려 하고 있고, 미국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일반법은 없고 비교적 데이터 유통이 자유로우나, CCPA 등 주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일본은 개인 데이터 활용에 대한 신탁 제도를 통해 개인데이터 관리 체계를 정비 중에 있다. 각국의 구체적인 개인정보 이동권 및 마이데이터 정책에는 차이가 있으나 개인정보의 유통과 관련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 마이데이터 관련 쟁점 및 향후과제

#### 1) 마이데이터 관련 개인의 권리 보장

유럽연합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마이데이터 정책은 데이터 활용을 통한 편의성 증대뿐만 아니라 그 전제로서 데이터 주체인 개인의 정보이동권 등 권리보장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10 금융권 마이데이터산업의 근거를 규정한 「신용정보법」 또한 개인의 자발적인 동의를 통한 이동권 행사 및 자기정보결정권 보장을 전제로 마이데이터사업자가 개인의 신용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본인에게 제공하여편의성을 증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동권 행사를 위한 구체적인 동의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이터산업진흥원』, 2019.

않고 있으며, 개인정보자기관리를 위한 개인정보자기관리툴(Tool)에 대한 개발도 미진한 상황이다. 이와 달리 유럽연합의 경우 개인정보자기관리시스템(PIM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또는 개인정보저장소(PDS: Personal Data Store) 도입·활용이 진행 중이다. PIMS 및 PDS는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저장·관리하고 기업 간 데이터 이전을 중개 하는 플랫폼 기능을 한다. 111) 일본도 개인이 직접 자신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뢰할 만한 대리인 (정보은행)을 두고 계약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이동권 행사 동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체계의 개발 없이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개인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수동적으로 약관에 동의하고, 정보 이동 이후에는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수 없는 등정보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12) 금융위원회가 2020년 마이데이터 포럼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보의 원천은 금융소비자이며, 이들의 자기정보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 시 개인정보자기관리체계를 수립하는 방안을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13)

#### 2) 이동 정보의 범위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과는 달리 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서만 이동권을 인정하고 있다. 개정「신용정보법」제33조의2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의 주체인 본인은 본인 및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이동권의 행사대상 정보는 동법 제2조제9호의2 상의 신용정보로 제한되어 있다.

<sup>9)</sup> 한국인터넷진흥원, 『일본 정보은행 관련 정책 추진 동향』, 2018.

<sup>10)</sup>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내서』, 2019.

<sup>11)</sup> 조성은, 『해외 개인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 국회입법조사처 전문 가간담회, 2020.9.1.

<sup>12)</sup> 조성은, 『해외 개인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 간담회, 2020.9.1. 참고.

<sup>13)</sup>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 개최 결과」, 보도자료, 2020.6.29.

그러나 실제로는 이동권의 대상이 되는 신용정보와 그렇지 않은 개인정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영역이 존재할 수 있다. 특히 이동권이 인정되는 신용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한 시행령 [별표1]에 '주문내역정보'가 이동권의 대상 정보로 포함되면서, 주문내역정보가 이동권이 인정되는 신용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촉발되었다. 일부 시민단체 및 인터넷기업협 회 등은 주문내역 정보를 신용정보로 보는 것은 확대 해석이며, 해당 내용이 시행령 입법예고에 포함되지 않아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음을 들어 주문내역 정보를 전송요구권 행사 대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 에 반대하고 있다. 14)

이와 같은 논란이 발생한 주된 이유는 법률상 이동 권의 대상으로 열거된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금 융당국은 주문내역정보를 포함하여 신용정보에 해 당하는지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 금융기관, 인터넷 기업, 소비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 및 개인정보 보호의 주무관청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행령 등에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3)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관계

개인정보 이동권의 도입을 두고 그 동안 도입에 관한 찬반 의견<sup>15)</sup>들과 개인정보 이동권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도입할 것인지, 「정보통신망법」이나「신용정보법」등 개별법에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다. <sup>16)</sup> 결국,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이동권을 「개

14)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서울YMC A시청자시민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디지털정보위원 회, 경실련, 「금융위의 쇼핑몰 '구매정보'「신용정보보호법」신용정보로 확대해석 우려」, 공동논평, 2020.8.; 한국인터넷기업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 「금융위는 업계를 혼란에 빠뜨린 신용정보법 시행령을즉각 다시 개정하라」, 공동성명서, 2020.8.19.

인정보 보호법」이 아닌 「신용정보법」에 신설하였다.

그런데 최근 금융과 기술의 결합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기존의 금융데이터 이외에 상거래 데이터도 신용평가 등에 사용될 수 있게 되어 일반 개인정보와 신용정보의 구분이 모호해질 우려가 발생하였다. 이와같은 모호성으로 인해 상거래 기업들은 고객의 거래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뿐만 아니라「신용정보법」을 모두 고려해야할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행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닌 금융 관련 개별법인 「신용정보법」만으로 개인정보이동권을 규율할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금융서비스 산업의 데이터 유통 활성화 측면만이 강조될 우려가 있다. 17) 따라서 금융 산업의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향후 점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개인정보 이동권 신설및 개인 데이터의 전반적인 보호에 대한 추가적인 입법및 정책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 4 나가며

개인정보 이동권과 관련하여 나라마다 추진 목적 및 정책에 차이가 있다. 개인정보 이동권은 데이터 유통을 통한 산업 활성화의 목적도 있지만, 정보주 체의 자기정보결정권을 통한 데이터 관리와 활용 측면도 있는 만큼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에 있어 면 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슈와 논점』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정보 소식지입니다.

<sup>17)</sup> 조성은 외 4인, 「개인주도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9.



<sup>15)</sup> 찬성하는 입장은 외국계 IT기업의 정보유통플랫폼 지배에 대응하는 방 안이 될 수 있으며, 4차 산업 혁명에 필요한 규제완화를 촉진 할 수 있 다는 주장이었다. 반대 의견은 아직 개인정보 보안 등에 준비가 미흡한 기업 상황과 해킹으로 인한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sup>16)</sup> 김서안·이인호, 「유럽연합과 미국에서의 개인정보이동권 논의와 한국에의 시사점」. 『중앙법학』, 21(4), 2019.